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29일 심기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 연구회 위원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13조2)
 -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위한 실비보상 조항 신설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위한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